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종호 의원)

의 안 번 호	제2739호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4일
공동발의자 : 박종호, 정택진 의원
찬 성 자 : 임정옥, 이인락, 조진호, 정순희, 윤인숙 의원 (5명)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함.(안 제2조)

나. 시장등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구청장이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하되 소유권 분리 및 설치 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상인회 등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구청장은 상인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른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38조의2, 제65조, 제67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2. 3. 15. ~ 2022. 3.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유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실되거나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시장등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등의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등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등에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등의 구역 내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하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등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며,「도로법 ,「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구청장이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시장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상인회 등록 변경 및 취소)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2. 30.〕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전문개정 2010. 6. 8.〕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